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규모가 크게 인상 조정됨으로써 많은 축산인들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몇 가지 궁금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문답식으로 설명코자 한다.

문 : 돼지 150마리와 소 30마리, 젖소 20마리 닭 3,000 수를 기르는데 농가부업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답 : 물론입니다.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해서 소득 1264-3033(79.11.15)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 6조의 2 별표 3에 열거한 여러 종류의 가축을 동시에 사육할 경우에도 각가축별로 별표 3의 규모이하이면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젖 소	20두	면 양	150두
소	30두	토끼	3,000두
돼지	150두	닭	3,000수
산양	150두	오리	3,000수

만일, 이중에 소를 31두 기르거나 닭을 기르다 3,001마리가 되면 다른 모든 가축에까지 농가부업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문 : 농가부업으로 하니까 사료구입이 불편한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마리수가 3,000마리인지 3,001마리인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답 :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면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가 없으므로 사실확인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이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가부업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매월 말의 사육두수 현황과 이를 증빙하는 사료구입 등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 1264-2271(79.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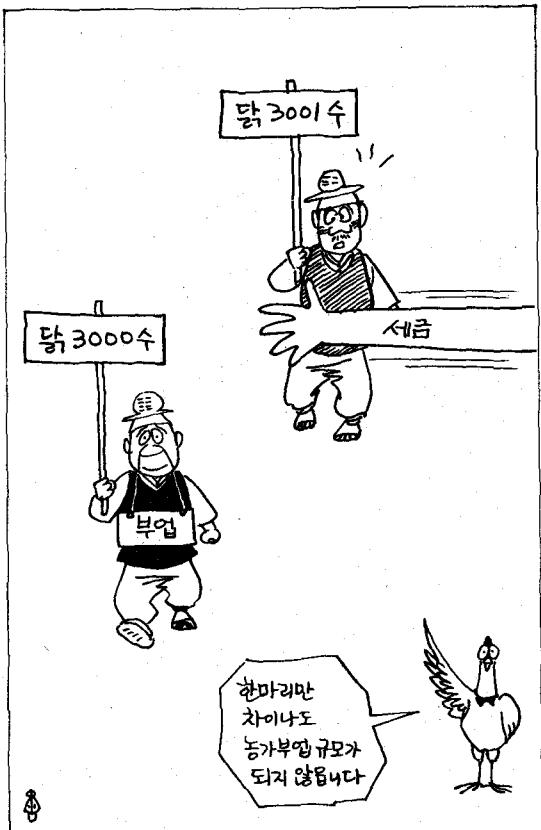
더욱 완전히 하기 위하여 면에서 매월 사육수증명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문 : 직장에 다니든가 또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별표3의 농가부업규모로 축산을 하여도 감면이 되는지요?

농가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답 :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사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농민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농무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서에 (농수산부) 문의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5조 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거주자인 농어민이 부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제기하는 규모이하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소득 1264-67 (83.1.10))

그외에 세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싶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월간양계 편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3월말까지 양성화해야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된 바 있으나 양계장 중에도 무허가건축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내용을 소개한다.

법적근거

제5공화국 출범후인 지난 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3호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무허가 건축물들이 양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법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1. 특정건축물이라함은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특정건축물로서 이 법 공포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공군기지 (보위지역 포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지정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83.3.3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

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건축물 중 무허가건축물 및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5 조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제 6 조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제 7 조 (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 제 3 조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대지 (사용승락을 받은 타인 소유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물일 것.
2. 건축물 제 27 조 및 (건축물의 대지가 4m이 상 도로에 접해 있고, 접한 부분의 길이는 2 m이하) 동법 제 31 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 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일 것.

제 8 조 (시정명령등)

제 9 조 (과태료) ① 시장군수는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85m²이하인 주거용대상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및 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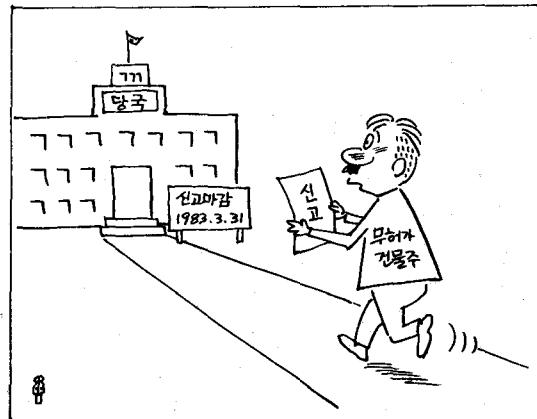
1 호, 2 호 ③ 항, ④ 항 생략.

제 10 조 (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의 사용)

제 11 조 (권한의 위임)

제 12 조 (벌칙) ①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장군수가 대상건축물을 신고하게 하는 등의 시정명령)

② 제 4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3 조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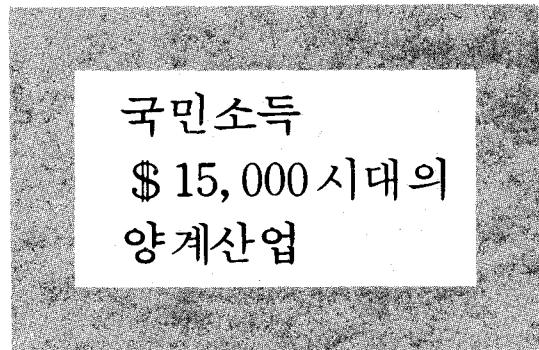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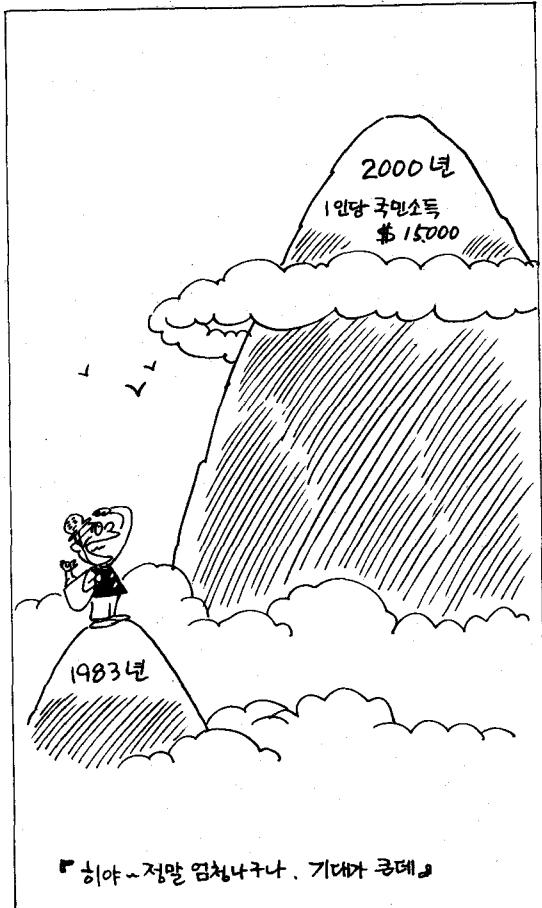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제 1 조 목적에서 보는 바와같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허가 건물이 많은 축산업계로서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과태료가 지역과 면적, 축사의 구조 등에 따라 다르나 대개 평당 2만원 정도로 건축비에 펼적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사에 대한 정부의 특별배려로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들이 정부의 입법취지와 같이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발표에 의하면 서기 2천년에는 우리의 경제규모가 현재의 캐나다



와 비슷한 수준이 되며 1인당 GNP는 \$ 14,981이 될 것이라고 한다. 1인당 GNP로 보면 지금의 서독과 불란서의 중간정도가 된다.

이렇게 소득도 늘지만 인구도 약 30%가 증가한 5,055만2천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 양계업자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소득이 80년의 \$ 1,508의 거의 10배에 인구까지 늘어나니 닭고기와 계란은 얼마나 소요될까? 양계장은 어떻게 확장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사료공장이나 동물약품, 기계·기구 등 관련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이겠다.

이때쯤 되면 수출도 \$ 1천억을 넘어서 지금의 영국수준과 맞먹을 것이고 무역수지는 \$ 41억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흑

시 수입해다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서기 2001년의 한국경제 모습

	1986	1991	2001
GNP(경상·역달러)	1,151	2,253	7,573
(80년 가격 역달러)	769	1,125	2,214
1인당 GNP(경상 ")	2,750	5,022	14,981
(80년 ")	1,839	2,509	4,381
人 口(천명)	41,839	44,856	50,552
성 장 률(%)	7.0	6.5	6.9
수출(80년·역달러)	340	524	1,047
수입(")	357	503	1,006
무역수지(")	△17	21	41

그러나 이보다도 양계를 몇수 규모로 해야 \$ 15,000이 되지? 하는 의문이 앞선다.

$14,981 \times 750\text{원} \times 5\text{인 가족} = 56,178,750\text{원}$
년간 5천6백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종류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산란계의 경우 계란1개 5원의 소득이 있고 닭한마리가 년간 260개 (71.2%) 산란하는 것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천6백만원 \div 5\text{원} \div 260\text{개} = 43,077\text{수}$$

즉, 4만3천수 규모는 되어야 하고 산란율이나 수익이 이보다 낮으면 그만큼 규모는 커져야 한다.

육계의 경우에도 주당 200원의 소득이 있으면 년간 28만수를 생산해야 된다는 계산이다.

지금의 서독이나 불란서 중간의 소득이면 그 때에는 매일 아침은 계란후라이 2개와 토스트, 우유로 할 것이고 점심과 저녁은 치방이 적은 닭고기를 먹겠지?

그런데 계사는 어디다 짓나?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린벨트 접도구역, 산림지역, 군사보호지역, 환경정비지역 등을 빼면 그때까지 계사건축 할만한 땅이 있을까? 그 엄청난 물량의 사료는 순조롭게 공급될까? 유통은……

이제부터 우리도 2천년을 향한 양계산업의 종합설계를 해야 하겠다.